

# 가계곤란 장학금 서류준비 안내

가계곤란 장학금 서류에는 가족관계 관련 서류, 재산세 관련 서류 및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각 장학금별로 신청 안내에 따라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해당 항목별 관련 서류 준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가족관계 관련 서류]

구분	준비서류	발급기관
해당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자치센터
부모가 부양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 부모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2) 인터넷발급: 정부24(주민등록등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 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	· 학생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	· 학생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한 부모의 주민번호가 공란이거나 사망으로 표기됨)	3) 교내 ECC 학생서비스센터 앞 발급기(지문인식)

## [재산세 관련 서류]

구분	준비서류	발급기관
해당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주민센터, 구청 2) 인터넷발급: 정부24(공동인증서필요) 위택스(공동인증서필요)  ※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음(전국 단위)
제출 대상	· 부모가 부양자일 경우 부·모·본인 각각 제출 · 학생 본인이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발급 대상 항목	· 재산세 중 건축물, 토지, 주택 (주민세, 교육세, 자동차세는 해당하지 않음)	
과세년도	· 각 장학금 신청안내의 해당년도 (예: 전년도, 최근 3년 등)	
대상지역	· 전국 자치단체	
재산세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	· 부양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 전국 단위 "과세 사실 없음"이 기재된 과세증명서 제출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Foreign) Registrat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과세대상 Tax Objects					
세목 Tax Items	부과연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Remarks

[ 전국 자치단체 ]

[ 과세년도 : 2021 ~ 2021 년 ]

재산세, 재산세(건축물), 재산세(토지), 재산세(주택)

위와 같이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전국 단위 "과세 사실 없음" 이 기재된 과세증명서 예시

\* 발급담당자 : /

위와 같이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년 월 일 (YYYY/MM/DD)

신청인 성명(법인명) :  
Applicant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  
Address(Business Office)

해운대구청장  
The Chief of Haeundae District



\*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ties.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구분	준비서류	발급기관
해당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인터넷 발급: 건강보험관리공단(nhis.or.kr)(공동인증서 필요)  2) 팩스 발급: 건강보험관리공단 (전화: 1577-1000)
대상 항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월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하지 않음)	
부모, 본인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부·모·본인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직장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서 상에 가입자(또는 부양자)로 있는 기간 동안의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	
부모 중 한 명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단, 건강보험증 피부양자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부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일(급여개시유효일)이 해당 장학금 신청 요건의 일자 이전이며 건강보험증 번호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증서 번호가 일치해야 함	
형제·자매 및 조부모 등이 부양자이고 부모와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피부양자(본인 및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학생 본인이 기혼인 경우	· 가입자(본인 혹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 및 피부양자(본인 혹은 배우자)의 자격득실확인서 각각 제출	
지역보험 가입자인 경우	· 세대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원칙 · 세대원(피부양자) 명의로도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이 경우 건강보험증 번호와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증서 번호가 일치해야 함(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일(급여개시유효일) 확인 필요)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학생 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 경우 수급자 구분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체크되어 있어야 함.